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437
----------	-----

발의연월일 : 2009. 1. 29.

발 의 자 : 박희진 의원의 9인

##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의 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중증장애인의 지원 계획의 수립 절차를 규정함 (안 제4조).
- 라.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자립생활 지원신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사. 시행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나. 합 의 :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일상생활 전반을 보조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절차)**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계획을 확정한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의 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4.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6. 장애인의 역량강화교육
7.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
8. 장애인의 기능훈련
9.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 □ 장애인복지법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 (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 (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 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장애동료간 상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2. 5  
교육사회위원회

## I. 심 사 경 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 1.29 박희진의원의외 9인
- 나. 회 부 일 자 : 2009. 1.30
- 다. 상 정 일 자 :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9. 2. 5)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박희진의원)

###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의 지원 등이 미흡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중증장애인의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자립생활 지원신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III. 검토의견 (전문위원 : 권태환)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는 목적을,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 안 제3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절차·확정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는 자립생활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 안 제6조는 자립생활 지원 신청에 관한 규정을,
- 안 제7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장애인복지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 중증장애인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결정하여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 본 조례는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의 수립 절차, 자립생활 지원·신청, 업무의 위탁 등이 상위법령 위배 및 조례 제정에 따른 법리적 문제가 없음.

- 그러나, 조례제정 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인 경비 등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기존의 예산에 계상된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지원 사업비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